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의견 수렴 확대 등〉
■ 정혜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110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의견 수렴 확대 등	3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생략규정 삭제	10
3. 의견 수렴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12
※ 참고자료	18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18
2. 환경영향평가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 비교	19

I. 제안경위

2025년 6월 27일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기 전까지 공중이나 협의 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지역,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후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초안이 도출된 이후 설명회나 공청회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평가항목·범위 등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에게 평가준비서에 대한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을 공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시작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의견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16조 및 제27조).

또한 현행법 제14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동법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확정될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개발계획의 영향이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함께 의견을 수렴하였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함으로써, 개발계획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리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개발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제14조 삭제).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이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민주적 통제방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의신청권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및 제2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 수렴 확대 등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기 전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한 후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7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u>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 ----- ----- ----- ----- ----- <u>의견을 수렴한 후 환경부장관에게</u> -----.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② ----- -----

현행	개정안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u>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u>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u><신 설></u> ③ ~ ⑤ (생략)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생략)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	----- -----작성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승인기관의-----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작성한 후 의견

현행	개정안
<u>성하여야</u>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u>승인기관의</u>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신 설></u> ③ (생략)	<u>을 수렴하여야</u>----- ----- <u>의견을 수렴한 후 승인기관의</u>-----.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¹⁾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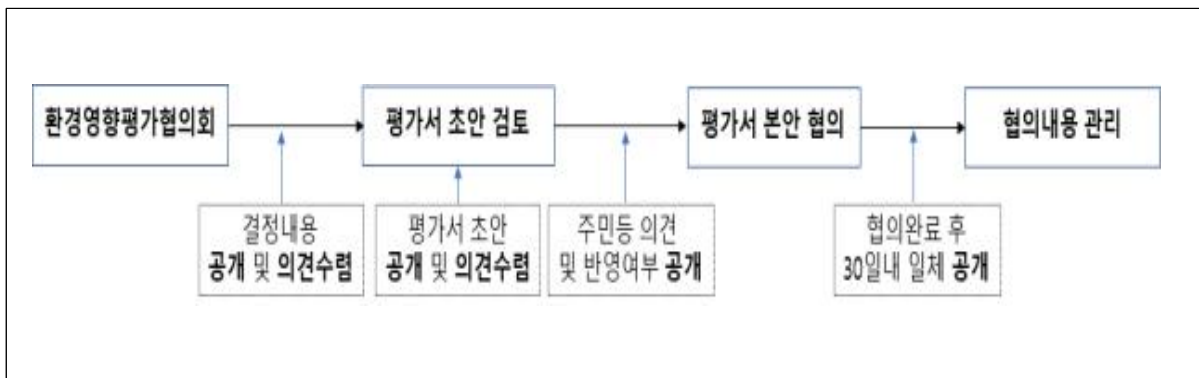
1)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환경영향평가 등은 평가준비서 작성 및 항목등의 결정, 평가서 초안 작성, 평가서 작성 및 협의 등으로 추진되는데²⁾,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의견수렴절차에 대한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음³⁾.

[환경영향평가 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 <참고자료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절차>

- 3)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 제1항및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정책계획(이하 “정책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 세부내용]

절 차	내 용
평가항목· 범위등 결정내용 공개	▪ (주체) ^(전략) 개발기본계획 수립 행정기관, ^(평가) 승인기관 또는 기후에너지 환경부 ▪ (기간·방식) 승인기관·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및 EIAASS에 14일 이상 게시 * (협의회 구성) 주민대표,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 협의기관장 지명 소속 공무원, 관할 지방환경관서의장 추천 소속공무원 등 10명 내외
평가서 초안 공람	▪ (주체) ^(전략) 개발기본계획 수립 행정기관, ^(평가) 관할 시·군·구 ▪ (기간) ^(전략) 20~40일, ^(평가) 20~60일 ▪ (방식) 온·오프라인 병행 실시 - (온라인)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및 EIAASS에 게시 - (오프라인) 관할 지자체마다 각각 1개소 이상 공람장소 설치
설명회 (의무 개최)	▪ (주체) ^(전략) 개발기본계획 수립 행정기관, ^(평가) 사업자 ▪ (기간·방식) 초안 공람기간 내에 대상지역 각각의 시·군·구에서 개최
공청회 (주민 요구시 개최)	▪ (주체) ^(전략) 개발기본계획 수립 행정기관, ^(평가) 사업자 ▪ (주민요구 요건) ① 주민 30명이상 요구시, ② 주민 5명이상 요구하고, 그 수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러나 현행법의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한 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평가준비서 및 본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음⁴⁾.

이에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기 전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기 전과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4) ‘환경영향평가법, 이렇게 바꾸자’ 자료집 (2024.11.26. 녹색연합 주관,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등 공동주최 토론회)
“거짓·부실 작성에도 공사는 강행...‘있으나 마나’환경영향평가 근본적 개선 시급”, 한국일보, 2025.07.09.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후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주민 등의 정책수용성을 제고하여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법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에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 및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계획 수립 행정기관의 장⁵⁾이 검토하여 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평가서 초안에 대해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협의회 및 초안단계에서 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투명성 제고 및 주민 알권리 강화 측면에서 의견수렴 범위 및 절차 확대 등에 대해서 필요 절차, 단계적 도입방안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⁶⁾⁷⁾.

5) 평가시에는 승인기관장 또는 협의기관장

6) 또한, 개정안 제14조 및 제16조, 제27조가 의결될 경우 시스템 정비 및 홍보기간 등 준비기간을

둘째,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서술된 평가항목·범위 등의 사항은 현행법 제11조 및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시작단계부터 국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개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⁸⁾⁹⁾.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함.

- 7) 이외에 “**국립생태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에 승인·협의기관, 주민대표, 민간전문가 등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이미 보장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 제도 내에서도 해소가 가능하며, 초안단계에서 의견 수렴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평가준비서 단계에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도입하는 것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한국환경연구원**”은 준비서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를 협의회 논의 후 실시할 것인지 협의회와 별도로 병행하여 진행할 것인지의 방식 결정과 현재 주민대표가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협의회 구성·운영 방식을 현행과 같이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방식 또한 초안단계와 동일하게 공고·공람 및 설명회 방식으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한국주택협회**”는 현행법상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주민의견수렴절차 추가신설은 비효율적인 중복행정절차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8) < 개정안의 제안이유 >

(...) 이에 평가항목·범위 등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에게 평가준비서에 대한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을 공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시작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의견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이하 생략)

- 9)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생략규정 삭제

개정안은 현행법 제14조를 삭제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도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현재 도시개발구역이나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등 개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사업 추진의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과 ②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함¹⁰⁾.

10) 「도시개발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다만,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견수렴이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¹¹⁾¹²⁾.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14조를 삭제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도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환경영향에 대한 충실한 의견수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전략평가 초안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시에도 절차를 중복해서 진행하는 것은 행정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중복해서 진행하는 것은 행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의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고 등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환경영향평가법, 이렇게 바꾸자’ 자료집 (2024.11.26. 녹색연합 주관,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등 공동주최 토론회)

12) <참고자료 2. 환경영향평가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 비교>

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 주민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³⁾¹⁴⁾¹⁵⁾.

3. 의견 수렴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25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	-----

13) 이외에 “한국주택협회”는 다른법령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의 알권리를 이미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는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14) 참고로, 현행법 제25조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제12조 및 제13조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

15) 이외에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법 제25조 등의 인용조문 정비와 개정안 시행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3조의2(이의신청)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개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이의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25조의2(이의신청) ① 제25조제4항에 따라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사업자에게 공개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

현행	개정안
	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되며, 평가준비서 작성 및 항목등의 결정, 평가서 초안 작성, 평가서 작성 및 협의 등으로 추진됨¹⁶⁾.

이 중 평가서 초안 작성 단계는 작성된 초안에 대한 공고·공람, 설명회, 공청회, 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평가서 본안에 의견반영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¹⁷⁾,

16) <참고자료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절차>

- 17)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요]

- (평가항목 범위 등 결정) 평가준비서 작성 → 평가항목 범위 등 결정(협의회 심의) → 결정 내용 공개 → 주민 등 의견 수렴 → 평가서 초안에 의견 반영
 - (평가서 초안 공람) 평가서 초안 작성 → 공고·공람, 설명회(의무), 공청회(주민요구서) → 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평가서 본안에 의견 반영
 - (평가서 본안) 협의회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검토내용 및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반영 여부를 포함하여 평가서 본안 작성
- ※ 협의기관장은 평가서가 제출되면 법 제13조, 법 제15조, 법 제25조, 법 제26조에 따른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에 대한 적정 반영 여부와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사유의 타당성 검토(협의업무 처리규정 제6조)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이후 의견이 반영되지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고·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않았을 경우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민주적 통제방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¹⁸⁾.

이에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 강화와 제도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평가제도에서 각 단계별 공개 및 의견수렴절차를 두고 있고, 각 단계별로 제출된 의견 및 검토·반영 여부를 포함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에 제출하면 협의기관에서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에 대해 적정 반영 여부와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주민등의 의견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절차를 두고 있다는 의견과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의 반영 또는 미반영 행위는 행정청의 최종 승인·결정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중간과정으로, 그 자체가 법적 의무를 새로 부과하거나 기존 의무를 변경하는 처분

18) ‘환경영향평가법, 이렇게 바꾸자’ 자료집 (2024.11.26. 녹색연합 주관,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등 공동주최 토론회)

“거짓·부실 작성에도 공사는 강행...‘있으나 마나’환경영향평가 근본적 개선 시급”, 한국일보, 2025.0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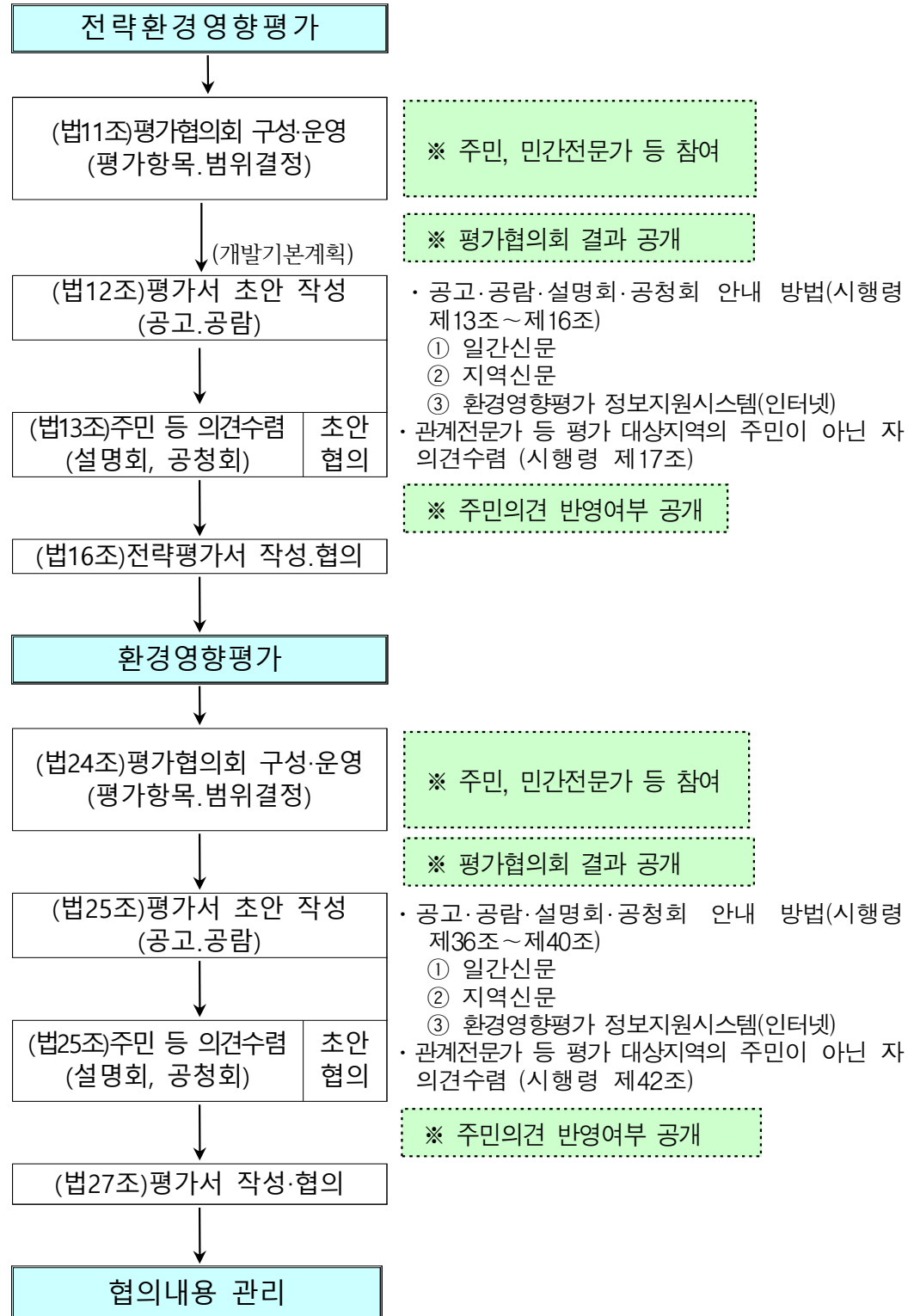
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⁹⁾.

문 의 처
02)6788-5541

19) 개정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의견 반영 여부는 EIASS에서 공개하고 있어 의견제출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제도 전면 도입시 남발이 우려되며, 특히 행정력 낭비와 사업자 피해가 예상되고, 넘비시설의 경우 반대단체가 사업추진이 지극히 어려우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한국주택협회**”는 이의신청권의 과잉보장이고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한국골재협회**”는 평가서 초안 작성시 의견수렴 과정이 있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개발 현장 여건에 따라 현실적으로 실현·반영이 어려운 요구 등이 지속 발생할 수 있어 사업진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참고자료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절차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2. 환경영향평가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 비교

구분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대상 범위	평가대상지역 주민	행정구역		
공고 방법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 둘 이상의 일간지(일간신문, 지역신문) -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 지역신문 - 지정권자 인터넷 홈페이지	
공람 방법	-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평가서 초안 - 평가서 초안 비치	개발계획 관련 서류 사본 비치	해당계획 관련 서류 사본 비치	해당계획 주요 내용
공람 기간	20일 이상 40일 이내	14일 이상	14일 이상	14일 이상
형태	공람기간 중 설명회 개최	공람	공람	공람
공청회	30명 이상의 주민 요청 시 5명 이상의 주민이 요구하고 설명회에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과반 이상인 경우	면적 100만㎡ 이상인 개발계획	(관련규정없음)	(관련규정없음)
비고 (전평 대상)		25만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군관리계획	산업단지 지정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